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OCI Power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1 / 12     |



# 안전 보건 관리 규정

OCIP\_SH\_01

2025-07-03

OCI Power Co., Ltd.

|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|             | Page    | 2 / 12 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OCI Power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3 / 12     |

## 1. 적용범위

-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사업장과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본 규정은 협력업체, 하도급업체, 방문자에게도 적용한다.
-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.
  - 본사(군산공장)
  - 서울사무실
  - 태양광 공사 현장
  - 기타 관련 사업장

## 2. 목적

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안전보건"이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의미한다.
- "산업재해"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.
- "태양광 설치"라 함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조,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.
- "중대재해"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를 의미한다.

## 4. 책임과 권한

-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을 지며,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<b>Doc No.</b> | <b>OCIP_SH_01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Rev No.</b> | <b>0</b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Date</b>    | <b>2025-07-03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Page</b>    | <b>4 / 12</b>     |

#### 4-1. 안전보건관리 조직

회사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.

- 1) 안전보건관리책임자
- 2) 안전보건관리담당자
- 3) 관리감독자
- 4) 안전보건관리위원회

#### 4-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)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4)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5)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- 6)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4-3. 안전보건관리담당자

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.

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작업장 순시 및 점검
- 2) 근로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발견과 그 개선방법의 건의
- 3) 안전장치·보호구 등의 점검과 불량품의 발견 통보
- 4)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
- 5)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

#### 4-4. 관리감독자

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작업에 관한 지휘·감독
- 2) 설비·작업장소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
- 3)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착용상황 확인
- 4)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
- 5)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

#### 4-5. 안전보건관리위원회

- 1)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- 2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OCI Power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5 / 12     |

## 5. 안전보건관리계획

### 5-1.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안전보건관리목표
  -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업무분장
  - 안전보건교육계획
  - 작업안전관리계획
  - 건강관리계획
  - 안전보건관리 예산
  -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
### 5-2. 위험성평가

-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.
  - 최초평가: 사업 개시 전 또는 설비 도입 전
  - 정기평가: 연 1회 이상
  - 수시평가: 공정 또는 설비 변경 시, 사고 발생 시(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한 작업 개시 전에 실시) 등
-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### 5-3. 안전보건목표

- 회사는 매년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안전보건목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재해율 목표
  - 위험성평가 개선목표
  - 안전보건교육 목표
  - 작업환경 개선목표

### 5-4. 예산편성

-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안전보건관리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안전보건교육비
  - 개인보호구 구입비
  - 안전시설 설치·개선비
  - 작업환경 측정·개선비
  - 건강진단비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6 / 12     |

## 6. 안전보건교육

### 6-1. 안전보건교육

- 1)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안전보건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현장교육, 온라인교육, 비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다.
- 3)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 6-2. 신규채용자 교육

- 1) 신규채용자에게는 채용 후 작업배치 전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신규채용자 교육시간은 16 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3)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
  - ② 작업안전 및 사고예방 요령
  - ③ 개인보호구 착용법
  - ④ 응급처치 요령
  - ⑤ 회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

### 6-3. 정기안전보건교육

- 1) 모든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6 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- 2)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.
- 3) 교육내용은 계절별, 업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.

### 6-4. 특별안전보건교육

- 1)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  - ① 건설기계장비(지게차, 크레인 등) 운전업무
  - ② 고소작업대 운전업무
  - ③ 아크용접 등 용접업무
  - ④ 전기작업업무
  - ⑤ 유해·위험기계기구 취급업무
- 2) 교육시간은 업무별로 16 시간 이상으로 한다.

### 6-5. 교육기록 관리

- 1) 모든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.
- 2) 교육기록에는 교육일시, 교육내용, 교육시간, 교육대상자, 강사명을 기재한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<b>Doc No.</b> | <b>OCIP_SH_01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Rev No.</b> | <b>0</b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Date</b>    | <b>2025-07-03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Page</b>    | <b>7 / 12</b>     |

## 7. 작업안전관리

### 7-1. 일반작업 안전관리

- 1) 모든 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3) 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
- 4)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작업은 [별표 1]과 같다.

### 7-2. 태양광 설치 작업안전관리

- 1) 태양광 설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작업 전 현장 안전점검 실시
  - ② 기상조건 확인 (우천, 강설 및 풍속 10m/s 시 작업 중단)
  - ③ 개인보호구 완전 착용
- 2) 추락방지시설 설치
  - ① 안전대 부착설비, 취약구간 안전발판(작업통로) 및 안전난간 등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현장소장(안전보건관리책임자)은 일일 안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### 7-3. 전기작업 안전관리

- 1)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활선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전기작업 자격자만 작업
  - ② 절연용 보호구 착용
  - ③ 안전거리 확보
  - ④ 안전감시자 배치
  - ⑤ 작업 전에는 반드시 검전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7-4. 고소작업 안전관리

- 1)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2)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사다리 사용 시에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4) 강풍, 강우 시에는 고소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.

### 7-5. 중량물 취급작업 안전관리

- 1) 2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에는 2인 이상이 작업하여야 한다.
- 2) 크레인 등 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정격하중 준수
  - ②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
  - ③ 신호수 배치
  - ④ 적절한 걸이 방법 사용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<b>Doc No.</b> | <b>OCIP_SH_01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Rev No.</b> | <b>0</b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Date</b>    | <b>2025-07-03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Page</b>    | <b>8 / 12</b>     |

## 7-6.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

- 1)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  - ② 강제환기 실시
  - ③ 작업허가서 발급
  - ④ 안전감시자 배치
- 2) 밀폐공간 작업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 8. 설비 및 기계안전관리

### 8-1. 유해·위험기계기구 관리

- 1) 유해·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) 법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3)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4) 모든 기계기구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8-2. 전기설비 안전관리

- 1)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,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2) 고압전기설비는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3) 모든 전기설비에는 적정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전기작업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.

### 8-3. 화재·폭발 방지

- 1) 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가연성 물질은 안전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.
- 3) 화기취급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4)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8-4. 안전장치 관리

- 1) 모든 안전장치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2) 안전장치의 해제나 기능정지는 절대 금지한다.
- 3)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리하여야 한다.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OCI Power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9 / 12     |

## 9. 개인보호구 및 보건관리

### 9-1.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

- 회사는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근로자는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- 개인보호구의 점검 및 교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### 9-2. 근로자 건강관리

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.

- 건강진단(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)
- 건강상담 및 보건지도
-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- 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

### 9-3. 작업환경 관리

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.

- 조명, 온도, 습도 등 물리적 환경
- 분진, 유해가스 등 화학적 환경
- 작업공간, 휴게시설 등 작업공간 환경
-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한다.

### 9-4. 화학물질 관리

-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.
- 유해화학물질은 적절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한다.
-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.

## 10. 사고대응 및 보고

### 10-1.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

-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.
  - 추가 사고방지를 위한 현장조치
  -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
  - 관련 기관 신고 (119, 112 등)
  - 회사 내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
- 모든 근로자는 응급처리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.

### 10-2. 산업재해 보고

-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자는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<b>Doc No.</b> | <b>OCIP_SH_01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Rev No.</b> | <b>0</b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Date</b>    | <b>2025-07-03</b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<b>Page</b>    | <b>10 / 12</b>    |

### 10-3. 사고조사

- 1)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.
- 2) 사고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주관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.
- 3) 사고조사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하고 관련자에게 공유한다.

### 10-4. 재발방지대책

- 1)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2) 재발방지대책에는 기술적 대책, 관리적 대책, 교육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3)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## 11. 협력업체 안전관리

### 11-1. 협력업체 선정

- 1) 협력업체 선정 시에는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2) 안전관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
  -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
  - ③ 안전교육 실시현황
  - ④ 안전관리 인증 취득현황

### 11-2. 협력업체 안전관리

- 1)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3) 협력업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 11-3. 혼재작업 안전관리

- 1) 협력업체와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·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2) 혼재작업 시에는 통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3) 혼재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11 / 12    |

## 12. 보칙

### 12-1. 포상 및 제재

- 1)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- 2)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.
  - ① 구두주의
  - ② 서면경고
  - ③ 교육명령
  - ④ 징계처분

### [별표 1] 작업허가서 대상 작업

- 1) 고소작업(2m 이상)
- 2) 밀폐공간 작업
- 3) 화기작업
- 4) 정전작업
- 5) 크레인 작업
- 6) 굴착작업
- 7) 기타 위험작업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<b>OCI Power</b> | 안전 보건 관리 규정 | Doc No. | OCIP_SH_01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Rev No. | 0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Date    | 2025-07-03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Page    | 12 / 12    |

### 13. 제·개정 이력

| Revision number | Description | Name (Date)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"0"             | ■ 최초 제정     | Seunghyun Ko<br>(2025-07-03)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